

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2. 12(금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9(금)
- 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일·숙직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, 군 실정에 맞게 새로이 일·숙직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일·숙직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하고 지급액(30,000원)은 규칙으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함.(안 7조 제5항 신설)

3.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
 - 지금까지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·지급되던 일·숙직수당을 자치단체의 당직근무인력, 당직시설상태,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.
 - 지금까지 우리군은 2001년 100%인상된 금액인 10,000원으로 지급되어 왔으며,
 - 이는 그간의 물가인상률과 근무여건등을 감안할 때 개정되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
 -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 등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